□ 제181회 거창군의회 제1차임시회 ☐ 2012. 2. 24.(금)

검토보고서

○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안 2
○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 거창군 도로조명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9
○ 거창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 13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현 재)

의 번호

2012-6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가. 제출일자 : 2012. 2. 13.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위원회 회부 일자 : 2012. 2. 14.

2. 제안이유

농촌인력난을 해소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연중 안정적인 농작업 일자리를 제공하여 농작업 참여자의 생계안정과 농촌복지증진을 도모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안 제5조)
 -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에 농작업 참여신청을 하여 1일 8시간이상 일손 부족 농가, 영농작목반, 영농법인, 농산물가공 포장,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의 사업에 참여한 사람
- 나. 지원범위(안 제6조)
 -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 지원, 재해보험, 안전용품제공 등
- 다. 지원신청 및 지원금 지급(안 제7조, 제8조)
 - 농작업 참여 구인신청은 2~3일 전에, 농작업 참여자의 교통비신청은 농작업 완료후에 신청
 - 지원금 지급은 교통비는 1개월 단위로 지급, 재해보험은 작업일 전에 가입
- 라. 관리・감독(안 제9조)
 - 보조금 관련은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

4.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제1항제4호·제8호·제9호
- 나. 예산조치 : 40,000천원(교통비 지원, 재해보험가입, 안전용품제공)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 작성대상임
-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2.01.30. ~ 02.19.)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농촌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농촌인력부족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인력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농작업 인력난 해소와 농작업 일자리 참여자의 생계 안정과 농촌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사안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 이 조례안은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011년 통계연보에 의하면 우리군은 전체 26,983세대의 41%인 11,129세대가 농가수인 농업군으로서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인력확보를 위해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 2011.7.25] [법률 제10966호, 2011.7.25, 일부개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직업 및 노동 시장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전망에 관한 조사·공표에 관한 사항
-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 4. 산업·직업·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 6.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 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 (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 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12-7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가. 제출일자 : 2012. 2. 13.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위원회 회부 일자 : 2012. 2. 14.

2. 제안이유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영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율을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조정하고, 기금의 사용용도를 거창군 조례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 6. 27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 6. 27 개정·시행됨에 따라 의무예치율이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변경함
-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 개정 및「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시행규칙」제20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에 맞춰 규정을 정비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68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입법예고(2012. 1. 4 ~ 1. 24) 결과 : 특기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기금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우리군은 지난 2005년부터 재난관리기금 관련조례를 마련, 기금을 운용해오고 있는 바,
- 지난해 6월 2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 개정에 맞추어 안 제3조에서 기금 법정적립액 총액의 일부를 금융회사 등에 예치토록 하는 의무예치비율을 종전의 30%에서 15%로 하향조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명시한 것이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 또한, 기존에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역별 재난의 특성을 반영하여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의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 ・보강, 긴급구조능력의 확충 등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규정함으로써 우리군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활동이 한층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의미의 개정안으로서, 우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며,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 2011.9.9] [법률 제10442호, 2011.3.8, 타법개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u>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시행 2012.1.26]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1. 법 제3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용도
- 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 다.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라.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마.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

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 바.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 2.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전문개정 2011.6.27]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u>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u> 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74조 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 ③ <u>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u> 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

의 안 번호

2012-8

거창군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가. 제출일자 : 2012. 2. 13.

나. 제 출 자 : 백범영·조기원·김재권·이성복 의원

다. 위원회 회부 일자 : 2012. 2. 14.

2. 제안이유

거창군내의 도로조명시설의 기능적 조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로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도로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도로의 종류·기능·구조 및 확장계획 등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 규정과 신청·협의·이관의 절차를 정함(안 제 4조, 제5조)
- 나. 가로등과 보안등의 설치기준과 설치 우선순위를 정함(안 제6조, 제7조)
- 다. 가로등은 디자인을 통일하고, 보안등 설치는 필요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9조)
- 라. 도로조명시설을 수시·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유지관리토록 정하였고, 훼손·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토록 함.(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 마.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점등·소등규정과 유지관리 책임자를 정하였고, 군수는 필요시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지방자치법」제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

라. 기 타

- 입법예고(2012. 2. 14 ~ 2. 20)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거창군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 복지증진 욕구에 의해 설치된 도로조명시설의 수가 2011년 11월 기준 자료에 의하면 6,170여등에 이르고 있는 바,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 이 조례안은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에게 수혜를 주는 도로조명시설의 설치・유지관리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로조명시설 설치・유지관리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가. 지방자치법 [시행 2011.10.15] [법률 제10827호, 2011.7.14, 일부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11.7.14>
-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의 번호

2012-9

거창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가. 제출일자 : 2012. 2. 13.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위원회 회부 일자 : 2012. 2. 14.

2. 제안 이유

거창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을 제정하여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며,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설립 및 운영(제2조)

- 회의소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
-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함.

나. 재원조성(제3조)

- 군수는 회의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

다. 사업(제4조)

- 농어업 관련 정책(예산사업포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자문 및 건의

-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
- 농어업에 관한 지도·상담·교육 참여
-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
-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등

라. 수익사업(제5조)

- 회의소는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수행

마. 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제6조)

- 군수는 거창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 시행

바.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7조)

- 회의소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 제출

4. 참고사항

- 가. 입법예고(2011.12.26 ~ 2012.01.15)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40,000천원(2012년도 당초예산 확보)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대상

다. 관련법규

- 「대한민국헌법」 제123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1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7조
- 「민법」제32조 등

5. 검토의견

-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민간농정기구 설립계획에 우리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 이 조례안은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 시 거창군 농업의 발전 및 농업인 지위향상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촌진흥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가.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123조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 2012.1.26]

제11조(농어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2.1.26]

제3조(농어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② 법 제3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농어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지원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원대상 단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수산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 다. 생산자단체
- 2. 지원하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법 제4조에 규정된 각 책무를 관련 단체가 회원 공동으로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 나. 단체의 회원 및 농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에 필요한 시설의 건축비 또는 기자재 구입비
- 3. 제1호와 제2호의 지원기준 외의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라. 민법 [시행 2012.2.10] [법률 제11300호, 2012.2.10, 일부개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